

행정처분의 기준 (제23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.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라.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.
- 마.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, 시설 폐쇄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.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성매매피해자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3) 지원시설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시설의 입소자를 수용할 다른 적당한 지원시설이 없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사항	근거 법령	행정처분		
		1차	2차	3차
1. 상담소등이 법 제10조제3항, 법 제15조제4항 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	법 제31조 제1항제1호	경고	업무정지 1개월	상담소등 폐쇄
2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7조	법 제31조	경고	업무정지	업무정지

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제1항제2호		15일	1개월
3.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상담소등을 영리 목적으로 설치·운영한 경우	법 제31조 제1항제3호	경고	업무정지 1개월	상담소등 폐쇄
4. 상담소등의 장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·이용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범죄를 범한 경우	법 제31조 제1항제4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2개월	상담소등 폐쇄
5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0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. 설치 목적이 달성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	법 제31조 제1항제5호	상담소등 폐쇄		
나.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	법 제31조 제1항제5호	경고	업무정지 1개월	상담소등 폐쇄
6.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는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가.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성매매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상담소에 임시보호를 한 경우	법 제31조 제1항제6호	경고	업무정지 1개월	상담소등 폐쇄
나.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	법 제31조 제1항제6호	경고	업무정지 1개월	상담소등 폐쇄